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6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강경숙
차규근 · 이해민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개별 법률의 지휘·명령·보고 등의 용어도 촉탁·협력 등 대등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가 한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139條(人權擁護職務妨害) 警察</u> <u>의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u> <u>補助하는 者가 人權擁護에 關한</u> <u>檢事의 職務執行을 妨害하거나</u> <u>그 命令을 遵守하지 아니한 때</u> <u>에는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0</u> <u>年 以下の 資格停止에 處한다.</u>	<u>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u> <u>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u> <u>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u> <u>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u> <u>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가 한 촉</u> <u>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u> <u>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u>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u> <u>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u>